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 설치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9. 12. 18

시민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9. 12. 17.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99. 12. 17.
- 다. 상정일자 : 제67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99. 12.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조한영 산업위생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이 1999.1.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시행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가 1999.10.11 조례 제4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마포개발공사 사장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토록 하고, 비상설위원회임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9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완료토록 규정함
(안 제2조)
-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함(안 제2조)
- 사장후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자를 추천토록 하고,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제2항)
-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토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1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3호)이 개정되고, 상위법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 설치조례(1999. 10. 11 조례 제436호)가 개정됨에 따라, 마포개발공사의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공사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는 공사사장추천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되, 위원은 마포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및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총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됨.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의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과 공사의 임·직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음.

사장후보 추천시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기타 위원회의 간사와 회의록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전에는 지방공사 사장 임명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제58조가 개정됨에 따라 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설립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코자 하였음.

○ 안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및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각각 동수로 하였는바, 법제8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추천위원의 객관성 확보와 기관별 적정 배분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요지(이진표 위원) : 제3조제1항 제3호에서 사장이 사표를 내서 처리 되었을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사장추천위원이 가능한지?

- 답변요지(조병하 생활복지국장) : 사장 직무대리가 사업이사 이고 사업이사 직무대리가 비상임이사로 이사회가 존속하므로 사장추천위원 추천이 가능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이사회 구성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도 제3조제1항제3호가 가능한지?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그 경우에는 제3호는 제외됨.
- 질의요지(김유현 위원) : 서울시조례에는 사장추천위원회의 인원이 7인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위원은 9인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근본정신에 어긋나지 않는한 준칙안 인원내에서 가능함.
- 질의요지(한대운 위원) : 공사의 이사 추천권자는?
- 답변요지(조한영 산업위생과장) : 이사회의 구성은 사장, 사업이사, 비상임이사 3명으로 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 3명중 1명은 외부인사이고 2명은 당연직으로 기획재정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이며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2명은 사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임명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1999. 12. 1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이 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시행되고,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가 1999. 10. 11 조례 제4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마포개발공사 사장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토록하고, 비상설위원회임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3인, 구의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 3인등 9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완료토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함(안 제7조).
- 바. 사장후보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자를 추천토록 하고,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 통보토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제2항).

사.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토록 규정함(안 제8조제3항).

아.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차.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1999·1·29, 법률 제5708호)
-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1999·10·11, 조례 제436호)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필요함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 3인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②구청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공사의 임·직원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완료된다.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사장후보의 추천) ①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본청 과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협조) ①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